제 16 호

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조리읍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18년07월20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최종신고 주 소	신고사항
허**	허** 1961-10-05	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통일로	재등록
주**	주** 1977-09-11	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내산길	재등록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.

(담당자 : 박순자 문의전화 : 031-940-8131)

2018년 07월 13일

조리읍장 인